

「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7월 6일

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7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7월 21일

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강 신 해

나. 제안이유

-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·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·자재·장비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2)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)
- 3) 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 건설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·하도급 비율 및 지역 인력·자재·장비의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 건설 경기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의2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공동도급(49% 이상), 전문건설업 하도급(70% 이상), 지역 주민 고용(60% 이상), 지역 자재·장비 사용(70% 이상) 등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명시하여,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 및 공공 발주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